

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(손명수의원 · 윤영석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후 철도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국가가 교체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(안 제8조제2항 신설).

II. 검토의견

- 노후화된 철도차량 교체 지원(안 제8조제2항 신설)

개정안은 철도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노후화된 철도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필요한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제8조제2항으로 신설하려는 것인데, 현행법 제8조1)는 ‘철도산업의 지원’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반면, 철도안전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 제14조2)에서 규정

1) 제8조(철도산업의 지원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도산업의 육성·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철도산업에 대한 재정·금융·세제·행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2) 제14조(철도안전) ① 국가는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도안전에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철도시설관리자는 그 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할 때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고, 해당 시설과 이를 이용하려는 철도차량간의 종합적인 성능검증 및 안전상태 점검 등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③ 철도운영자 또는 철도차량 및 장비 등의 제조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의 안전한 운행 또는 그 제조하는 철도차량 및 장비 등의 구조·설비 및 장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의 향상을

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, 개정안의 내용을 안 제14조제4항으로 신설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수정함.

<안 제8조제2항에 대한 수정의견>

현행	원안	수정의견
제8조(철도산업의 지원) (생략) <신설>	제8조(철도산업의 지원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② 국가는 철도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철도운영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후화된 철도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필요한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	제8조(철도산업의 지원) (현행과 같음)
제14조(철도안전) ① ~ ③ (생략) ④ (생략) <신설>	제14조(철도안전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	제14조(철도안전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 ④ 국가는 철도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철도운영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후화된 철도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필요한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(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)

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국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철도사고조사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와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.